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10. 20(목) 10:00

제23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 급식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이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3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0. 7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0. 7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이 2021. 12. 21. 개정 2022. 6. 22. 시행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이 2022. 6. 21. 개정 2022. 6. 22.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목적 조문의 인용 조항 정비 (안 제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략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아동복지법」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임

나. 주요 내용

목적 조문의 인용 조항 정비 (안 제1조)

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「아동복지법」 개정 조항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9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현 행	개 정
<p>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</p> <p>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35조(건강한 심신의 보존)</p> <p>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2. 21.></p> <p>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2. 21.></p> <p>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1. 12. 21.></p>

□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조항

[시행 2022. 6. 22.] [대통령령 제32714호, 2022. 6. 21., 일부개정]

현행	개정
<p>제36조(급식지원)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</p> <p>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36조(급식지원)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 제35조 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「통계법」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. <신설 2022. 6. 21.></p> <p>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 제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. <개정 2022. 6. 21.>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21.>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2. 6. 21.>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21.></p> <p>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2. 6. 21.></p>